

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21년 12월 21일

국 무 총 리 김 부 겸

국 무 위 원
법 무 부 장 관 박 범 계

●법률 제18598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「형사소송법」 제312조제1항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개정)이 2022. 1. 1.부터 시행될 예정임(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「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단서).

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